

#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

(의안번호 제810호)

## 예비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6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7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주 문

-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

### 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.

### 4. 주요골자

- 별첨

#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,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,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, 업무추진비,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02.8.4~8.11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2002.8.30~9.1 기간 중 태풍 “루사” 피해복구, 고품질 쌀생산 조성사업 등으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단위 사업을 참고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아닌지, 예비비 집행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으로 지출결정 후 전액 불용 또는 과다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없는지,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태풍 “루사” 피해복구사업인 가축입식(3143-210-402-01) 사업을 2002. 10. 18 사업비 390천원을 지출결정후 2002. 12. 3 지출원인행위 하고 2003. 2. 7 387천원을 늦게 지출한 사유는?
- 답 : 2002. 8. 30 ~ 9. 1 기간중 태풍 “루사”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보고후 피해복구사업 확정, 예비비 사용결정, 지출원인행위 등의 절차를 거쳐 2003. 2. 7 지출하게 되었으며, 차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.
- 문 : 2002년도 수해 및 태풍 “루사” 피해복구 사업이 지출결정후 예산이월이 많고 지출이 늦은 사유와 금년에 다가올 수해에 대비 문제점이 없는가?
- 답 : 2002년도 수해 및 태풍 “루사” 피해복구 사업비 1,851,164천원 지출 결정후 2003. 2. 28까지 794,196천원(42.9%)이 지출되고 1,047,705천원(56.6%)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, 나머지 9,263천원(0.5%)은 불용 되었음.  
지출부분은 연도폐쇄기인 2003. 2. 28 현재까지이며, 이월액 사업비는 현재 공사진행이 90% 이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여

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, 수해복구 사업장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현지확인 조치하여 다가올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음.

○ 문 : 예비비 지출 내역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과 이월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현황을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바람.

● 답 :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토록 하겠음.

○ 문 : 지방도, 군도 피해복구 사업은 왜 이월되었는가?

● 답 : 설계준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, 사업비가 하반기 교부결정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음.

○ 문 : 노인복지촌 절개지 사면보호공사 사업은 하자보수 공사가 가능할 것인데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?

● 답 : 시급하게 복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태풍 “루사” 피해복구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, 하자보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○ 2003. 7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